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교육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94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7.
3. 회부연월일 : 2025.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를 현행 시·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서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로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안전교육) ① ----- ----- ----- ----- --- <u>시장·군수·구청장이</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u>시·도지사</u> 및 <u>시장·군수·구청장</u> (<u>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①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¹⁾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전교육 관련 법령 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교육대상자”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안전교육) ①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검사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²⁾,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17. (생략)

안전교육은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등록·검사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³⁾.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결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⑨ (생략)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⑤ (생략)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생략)

②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10」 (생략)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등록·검사 권한]

구분		권한자
사업자 등	충전사업자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가스용품제조사업자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집단공급사업자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판매사업자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저장자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위탁운송사업자 등록	시장·군수·구청장
시공사 안전성확인·완성검사		시장·군수·구청장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이므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⁴⁾.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2021년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1. 국회에 제출되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24.5.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4) 참고로,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를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군·구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시·도지사는 안전교육 사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⁵⁾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권한의 위탁 근거에 따라 안전교육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4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 8. (생략)

9.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10. ~ 14. (생략)

③·④ (생략)